#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73

발의연월일: 2021. 3. 15.

발 의 자: 강득구·홍성국·문진석

이원욱 · 김민석 · 이상헌

민병덕 • 이성만 • 이재정

맹성규 · 강민정 · 이용빈

의원(12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조건이 변화하고 있고,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의 요구 등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.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로 인한 언택트시대를 맞아 교육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원격대학이 좀 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원격대학이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"특수대학원"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"일반대학 원 및 전문대학원(의학·치의학·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 함) 또는 특수대학원"으로 확대하는 한편,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 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직업·직무역량강화에 대한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요구와 대학의 특성을 활용한 전공심화과정을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2,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).

#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2제2항 중 "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"을 "원격대학에는 일반대학원·전문대학원(의학·치의학·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) 또는 특수대학원"으로 한다.

제3장제5절에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3조의2(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)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 중 전 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·운 영할 수 있다.

- 제54조의2(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) ① 제53조의2에 따른 전공 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·운영 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
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-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,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29조의2(대학원의 종류) ① (현 제29조의2(대학원의 종류) ① (생 략) 행과 같음) ② 대학(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대학은 제외한다)에는 일반대 학원 ·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 학원을 둘 수 있고,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 며, 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-- 원격대학에는 일반대학원 • 둘 수 있고, 제30조에 따른 대 전문대학원(의학·치의학·한의 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 한다) 또는 특수대학원-----을 둘 수 있다.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제53조의2(사이버대학의 전공심 <신 설> 화과정)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・운영할 <신 설>

수 있다.

제54조의2(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) ① 제53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·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 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 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 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, 인가의 기 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